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횡령 및 징수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구미시

조 치 기 관 구미시

내 용

1. 업무 개요

구미시는 택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과 국토교통부가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구미시에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수입금이 구미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시 금고에 세입처리하거나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2.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횡령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가 징수·납입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7을 해당 시·군·구에 위임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삭제¹¹⁾)에

11) 2016. 5. 29.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09. 8. 21. 구 국토해양부 훈령 제361호) 제20조의2¹²⁾ 등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은 전액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¹³⁾)에 귀속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징수하면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나.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구미시 ♣국 ♣과¹⁴⁾ F은 2011. 7. 18.부터 2014. 7. 20.까지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F은 2014. 3. 13.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3,510원이 구미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자, 분임징수관이 위 보통예금계좌의 통장과 징수관 직인을 F에게 맡겨두고 인출액이 시 금고 등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9. 위 13,783,5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 참고사항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F은 [별표] “징계시효가 완성된 개발부담금 등

12) 2016. 7. 20.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가 삭제됨(2017. 1. 1.부터 시행)

13) 2009. 4.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4. 1. 7.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8. 3.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각각 변경됨

14) 2015. 7. 31. ☆과에서 ♣과로 명칭이 변경됨

수입금 횡령 명세”와 같이 위 보통예금계좌에 2011. 12. 25.부터 2012. 5. 17. 사이에 5회에 걸쳐 입금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및 예금이자 계 16,375,070원¹⁵⁾ 중 16,350,000원을 2012. 2. 6.부터 같은 해 5. 29. 사이에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 금고 등¹⁶⁾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징수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구미시 공인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삭제¹⁷⁾)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징수관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분임징수관은 위임받은 징수 업무에 필요한 징수관 직인을 직접 관리하여야 했고, 개발부담금 등 분임징수관과 그 보조자는 “2항 가”의 내용과 같이 시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에 대하여 징수 원인과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빠짐없이 징수되도록 하여야 했다.

15)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022,820원,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3,350,760원, 예금이자 1,490원, 계 16,375,070원

16)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3,350,760원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납입하여야 함

17) 2016. 5. 29.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미시 ♣국 ♣과 G은 2011. 7. 18.부터 2015. 1. 26.까지 개발부담금 등 분임징수관의 보조자로서 징수결의서를 중간 검토하는 등 부과·징수 업무를 주관하면서, F이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30,133,510원¹⁸⁾에 대해 징수결의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고 징수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위 금액의 징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구미시 ♣국 ♣과의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분임징수관 H¹⁹⁾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징수관 직인 관리 업무와 징수결의서 중간 또는 최종²⁰⁾ 결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보통예금계좌에 날인된 징수관 직인을 F이 관리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이에 따라 F이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14. 5. 29.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3,510원에 대해 징수결의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고 징수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위 금액의 징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F이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12. 2. 6.부터 2014. 5. 29. 사이에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수입금 30,133,510원을 횡령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8)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13,783,510원, 징계시효가 완성된 금액 16,350,000원, 계 30,133,510원
19) 분임징수관이었던 ♣과장 I은 2014. 4. 30. 퇴직하였고 후임 ♣과장은 2014. 7. 11. 임명됨에 따라, ♣과장이 아닌 H이 2014. 4.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20)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의 징수결의서는 분임징수관이 최종 결재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F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횡령금액을 구미시에 전액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위 보통예금계좌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직접 본 적이 거의없다면서 본인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H은 위 보통예금계좌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분임징수관은 징수결의서 결재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뿐 징수결의서 결재가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 징수결의서를 중간 검토하는 등 부과·징수 업무를 주관하는 분임징수관의 보조자로서, H은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분임징수관으로서, 시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에 대하여 징수 원인과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빠짐없이 징수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위 보통예금계좌 인출액이 자신들이 결재한 징수결의서에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다면 횡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위 보통예금계좌 입금액이 시 금고 등에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거나 위 보통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수입금 징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H은 「구미시 공인 조례」 제12조 제1항을 위배하여 위 보통예금계좌에 날인된 징수관 직인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F이 관리하도록 그대로 둔 잘못이 있으

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구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금 징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수입금 13,783,510원을 횡령한 F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람의 횡령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위로서 고의성이 있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수입금을 횡령한 F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고(징계)
-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F이 감사기간 중인 2018. 4. 19. 및 같은 해 4. 20. 횡령금액 계 30,133,510원을 모두 구미시에 반환하여²¹⁾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앞으로 관련 업무에

21) F은 2018. 4. 19. 및 같은 해 4. 20. 횡령금액 계 30,133,510원을 위 보통예금계좌로 반환하였고, 구미시는 같은 해 4. 20. 위 금액 중 13,783,510원을 시 금고에 납입하였고, 같은 해 6. 5. 나머지 16,350,000원 중 3,350,760원은 국고에, 12,999,240원은 시 금고에 각각 납입하였음

참고하며[통보(시정 완료)]

③ 앞으로 구미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수입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수입금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징계시효가 완성된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회령 명세

(단위: 원)

입금 내용				현금 인출 후 회령 내용		
입금일	종류	입금자	금액	인출일	금액	사용처
2011. 12. 25.	예금이자	-	1,490	2012. 2. 6.	4,950,000	개인채무 변제 등
2011. 12. 29.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4,942,890			
2012. 1. 31.	개발부담금 체납 증가산금	(주)-	3,350,760			
2012. 2. 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3,474,970	2012. 2. 16.	6,800,000	"
2012. 5. 1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4,604,960	2012. 5. 29.	4,600,000	"
계			16,375,070		16,350,000	

주: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일이 2018. 4. 16.이므로,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 4. 16. 이후의 행위만 징계시효 범위에 포함

자료: 구미시 제출자료